# Ⅲ.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규정 및 특징비교

#### 1. 관련규정

- 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 구입시,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, 천 재·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충족시에만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음.
  -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·신탁에서는 근로자가 긴급자금을 필요로 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표 11> 중간정산·중도인출·담보대출 관련규정 비교

	중간정산	중도인출	담보대출
관련	-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요구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 -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전무	- 무주택지주택구입시,가입자 또는 부양기족이 6개월 요양시 등으로 한정 - 중도인출에 따른 패널티관련 규정 전무	-퇴직연금적립금의 50%범위 내에서 담보대출 허용 - 무주택자의 주택구입, 본인 또는 기족의 6개월 이상 요양,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
관련 제도	퇴직금, 퇴직보험	DC형, IRA	모든 퇴직연금
근거	근로기준법 및 근퇴법 제9조 (퇴직금 중간정산사유)	근퇴법 제11조 (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사유)	근퇴법 제8조 (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)

- □ 또한 퇴직연금제도상의 담보대출 요건은 다소 엄격하여 근로 자의 긴급생활자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직연 금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  -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담보대출의 한도를 개인별 적립금 의 50%로 제한하고 있으며, 무주택자의 주택구입, 본인 또는 가 족의 6개월이상 요양,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.
  -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담보대출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, 그 이유로 담보권 설정·실행, 상계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 등을 들 수 있음.

### 2. 기능비교

□ 기업은 부채를 청산할 수 있어 중간정산을 선호하며 근로자역시 중간정산을 통해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어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긴급자금동원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.

<표 12> 제도간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기능차이

구 분	퇴직금제도	퇴직연금제도
중간정산 (중도인출)	- 퇴직금 누진효과 상실 - 근로자의 필요자금 확보에 유리한 반면, 노후재원 확보곤란	- 퇴직연금 누진효과 상실 - 근로자의 필요자금 확보에 상대 적으로 불리한 반면, 노후재원은 유지
담보대출	- 퇴직금 누진효과 유지 - 기업에 따라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존재	- 퇴직연금 누진효과 유지 - 적립금의 50%범위 내에서 담보대출 가능

- □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실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, 노후생활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며 DC형 퇴직연금에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함.
  -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노후재원 자체의 소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금 본래의 기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며,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한 점이 장점임.
  - 다만 담보권 설정, 상계,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결 되어 있어 절차와 실행이 복잡하며 실행 단계별로 이해상충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.

<표 13> 중도인출과 담보대출간의 장단점비교

구 분		중도인출	담보대출	
해당제도		- DC형만 가능	- DC형 및 DB형 모두 가능	
특 징	장 점	- 절차와 실행의 편리성	- 연금본래의 기능유지	
	단 점	- 적립금 인출로 연금 본래의 기능저해	-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어 절차와 실행이 복잡	

#### 3. 해외사례

- □ 미국은 근로자 이직시 개인퇴직계좌로의 이관을 통해 적립하 도록 하고 있으며,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.
  - 근로자 이직시 그간의 부여된 수급권의 비율에 따라서 연금 또 는 일시금이 정산되나, 이를 개인퇴직계좌에 이관하여 정년 퇴

직시까지 연금으로 계속 적립하고 있음.

-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C 및 IRA제도는 중도인출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59.5세 이하일 경우 세제혜택을 박탈하고 10%의 패널티를 부과함.
  -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59.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사고가 발생하여 고액의료비를 지출할 경우,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 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함.

<표 14> 주요국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규정

 구 분	미국	일 본	호 주	홍콩
중도인출	제한적 허용 (SEP-IRA등)	제한적 허용 (DC형)	제한적 허용 (장애 등)	제한적 허용 (장애 등)
담보대출	일부 허용	불허	불허	불허

- □ 일본은 DC형에 한해 제한적으로 중도인출만 허용하고 있는 반면, 담보대출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  - 호주는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, 경제적 궁핍, 이민, 정상참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치료, 주택담보대출연체로 인한 강제경 매방지, 장례 및 매장비용 등 일정한 사유시에만 중도인출 허용
  - 영국의 경우 담보 대출제도가 없으며 스위스는 주택구입과 영구 적 국외이주에 한해서 중도인출 허용
- □ 홍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립된 기금은 법정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까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
  - 다만, 60~64세 사이 조기 퇴직할 경우, 사망 혹은 영구장애가 발생하는 경우, 지난 1년간 기여실적이 전혀 없고 적립금이 소

#### 액(5,000 홍콩달러)일 경우 예외 인정

- □ 이처럼 선진국은 개인퇴직계좌 활성화,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의 제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지도 록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.
  -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가입률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시키고 있음.
  - 현재 아시아 2개국, 유럽 9개국, 미주 1개국 등 총 11개국이 퇴 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화를 통해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임.

#### <표 15> OECD 회원 30개국 중 강제 퇴직연금제도 운영국가

구 분	국가명
오세아니아(2개국)	호주, 뉴질랜드
유럽(9개국)	덴마크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슬로바키아, 스웨덴, 스위스
미주(1개국)	멕시코

자료: Pension at a Glance 2009, OECD.

- 퇴직연금 의무화유형: 사용자기여 의무화(호주, 스위스, 아이슬란 드)유형, 근로자기여 의무화(덴마크, 멕시코, 헝가리, 스웨덴)유형, 단체협약을 통한 의무화(네덜란드)유형 등으로 구분
-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퇴직연 금의 준의무화를 추진중에 있음.

## 4. 특징 및 시사점

- □ 선진국이 퇴직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선택권보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기조가 존재하기 때문임.
  -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퇴직금제도내의 중간정산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급여를 임금후불개념이 아닌 사회보장개념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함.
- □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중간정산 제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.
  - 그럼에도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연금가입을 임의선택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는 문화적 환경 차이 및 그 특수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음.
- □ 결과적으로 중간정산제, 중도인출제, 담보대출제의 적용기준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안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.
  - 즉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제도개선이 시급이 요구됨.